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능대학의 정관에 따른 교원 임용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85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능대학의 정관에 따른 교원 임용	2
2. 기능대학 설립·경영에 대하여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0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Ⅲ. 검토의견

1. 기능대학의 정관에 따른 교원 임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교원 중 학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용을 해당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4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 <u>사립학교법</u> 」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u>한국산업인력공단법</u> 」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 ----- ----- 다만, 「 <u>한국산업인력공단법</u> 」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2. 학장 외의 교원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

② ~ ④ (생략)	<u>용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9조¹⁾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설립한 기능대학 8개, 학교법인 ICT폴리텍대학이 설립한 기능대학이 1개로, 총 9개의 기능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기능대학의 교원을 학장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는데,²⁾ 학장 외의 교원의 임용³⁾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

1)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43조(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 ⑤ (생략)

3)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의미함(「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

고 있음.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 임용 시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용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임용 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교원의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⁴⁾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⑧ ~ ⑪ (생략)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의 체제는 1개 법인 아래 8개 대학으로, 1개 법인 아래 1개 대학인 일반적인 대학 체제와 달라 교원의 대학 간 전보를 위해서는 전입 대학과 전출 대학이 교육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양 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협의가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 교원인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학생의 민원제기, 징계 등으로 타 대학으로의 교원 전보가 필요한 경우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중 학장 외의 교원에 대하여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능대학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정관의 변경이 법률 개정에 비해 의견수렴과정이 비교적 간략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학장이 아닌 교원의 인사 운영 방침이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른 임용 시 임용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권리 보호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학장과 학장 외의 교원에 대한 임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않고 있는데, 「사립학교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법인 8대학 체계이므로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개정안에 따라 탄력적 인사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견 없음
교육부	교원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정관이 교육관계 법령에 우선하게 되어 교원 신분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필요
법무부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면 인사에 관한 공정성과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사립학교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5) 개정의 대상인 현행법 제44조제1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적용 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사립학교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임.

2. 기능대학 설립·경영에 대하여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2조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현행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학의 정관을 교육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려는 것으로, 기능대학이 해당 대학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정관은 법령보다 하위의 규범인 자치법규로서 제3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법령보다 우위에 두면서 이를 모든 기능대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위계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관에서 정한 조항을 교육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해야 할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교육부	정관이 교육관계 법령에 우선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고,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할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없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법무부	법령보다 기능대학의 정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기능대학에 대한 법규의 공백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학교 간 형평에 반하거나 법질서의 위계에 맞지 않은 우려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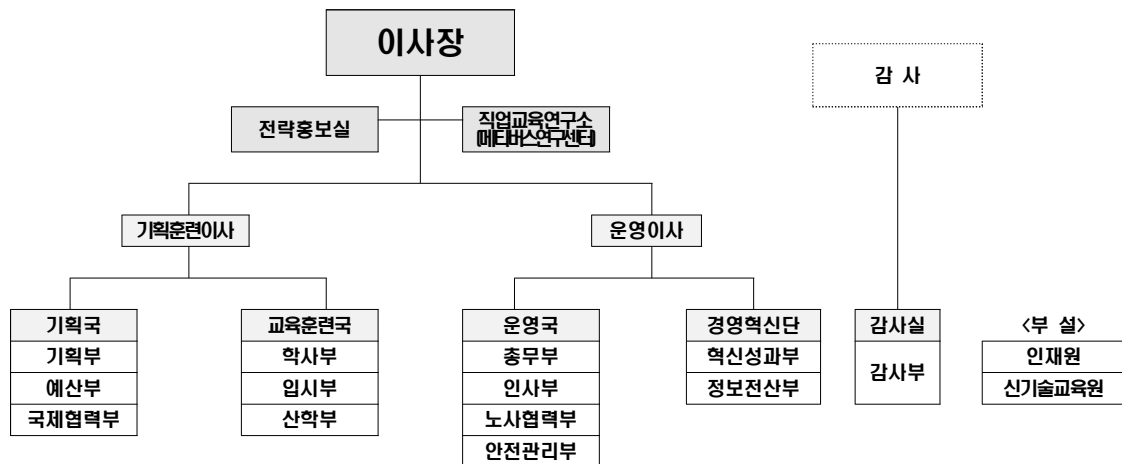
한국폴리텍대학 현황

1. 주요 교육 과정

- (1) 2년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공학사 학위과정인 ‘학위전공심화과정’
- (2) 청년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취업애로계층 대상 1년 이하 ‘직업훈련과정’
- (3) 신산업분야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하이테크과정’

2. 조직

- (1) 법인(본부)



- (2) 대학(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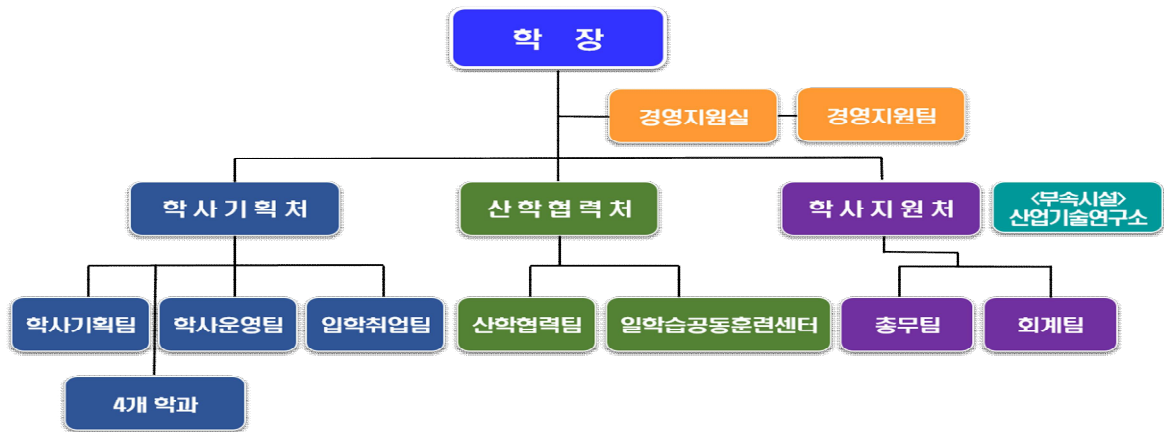
참고 2

ICT폴리텍대학 현황

1. 주요 교육과정

- (1) 정보통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인력 양성(산업학사학위과정, 2년제)
- (2)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능사양성과정, 6개월)
- (3) 정보통신산업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인정교육, 단기전문교육과정)

2. 조직



3. 교직원 현황

구 분	학장	전임교원	일반직원	계	비 고
인 원	1명	19명	19명	39명	초빙교원 1명, 계약직 16명, 파견직 4명, 도급직 9명 별도